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 -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WA(바세나르체제)¹⁾, NSG(핵공급국그룹)²⁾,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³⁾, AG(오스트레일리아그룹)⁴⁾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21년 4대 체제에서 합의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반영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과 이에 관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1. ‘21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및 통제사양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 1,2,2의2,3,4에 반영

(1)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

고시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에 다음 품목 등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5\]](#)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2D352	〈신설〉	2B352.j에 의해 통제되는 핵산 조립기와 합성기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3D006	〈신설〉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GAAFET") 직접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ECAD "소프트웨어"

1)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
 2)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 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자발적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를 만들어 회원국이 이를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고시 [별표 2] 이중용도품목에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 및 삭제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7]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3D006 (IL3.D.6.)	<신설>	"게이트올러라운드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GAAFET)" 구조를 갖고 집적회로의 "개발"을 위해 전용 설계된 '전자 CAD (ECAD)'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중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
3D006.a (IL3.D.6.a)	<신설>	a. '기하학적 데이터베이스 표준 II'('GDSII')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으로 '레지스터 전송 레벨 (RTL)'을 구현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또는
3D006.b (IL3.D.6.b)	<신설>	b. 전력이나 타이밍 규칙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용 설계된 것.

(3)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고시 [별표 3] 군용물자목록에서 다음을 포함한 품목 등이 신설되거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11]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제번호	개정 전	개정 후
ML13	장갑 또는 보호 장비, 시설물 및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c. <u>군용표준 또는 규격, 혹은 그와 상응한(또는 동등한) 자국 기준에 따라 제조된 헬멧과 이를 위해 전용으로 설계된 헬멧 덮개, 라이너 또는 안락패드;</u>	장갑 또는 보호 장비, <u>시설물, 구성품 및 부속품</u> 으로서 다음의 것: c. <u>헬멧과 특수 설계된 구성품 및 부속품으로서 다음의 것:</u> <u>1. 군사 표준이나 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헬멧</u> <u>2. 쉘, 라이너 또는 컴포트 패드, ML13.c.1 따라 특별히 설계된 헬멧;</u> <u>3. ML13.c.1에 명시된 헬멧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추가 방탄 요소.</u>
ML17	<신설>	"라이브러리" (매개변수 기술 데이터베이스)(1)는 관련 시스템, 장비 또는 구성품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기술 정보의 집합체

(4)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고시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의 AG3에 2D352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1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기타 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상 경미한 영문오류 등 수정사항을 고시 별지2의2에 반영

[별지 2의2] END-USDR STATEMENT(최종사용자 서약서) 양식의 ⑥ STATEMENT OF END-USER 란의 영문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전	수정 후
⑥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u>exporter's government written permission</u> is provided.)	⑥ STATEMENT OF END-USER We, as end user of the above item(s), certify that we: 2. will not resell or reexport it or its derivatives to another country or another person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Korean Licensing Authorities. -중략- (For the Nuclear Trigger items specified in the NSG Guideline Part 1, this prior approval is not necessary on the condition that <u>written permission of the exporter's government</u> is provided.)

3. 시행일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2월 02일 (금)

(2) 제출방법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 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문의 및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전화: 044-203-4836, 전자우편: dhkdkt1018@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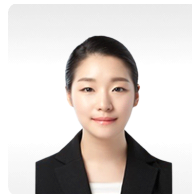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37호)
- [붙임2]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
- [붙임3] [별지 2의2] END-USER STATEMENT 개정-신구대조표
- [붙임4]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
- [붙임5] [별표 1] 전략물자기술색인 개정-신구대비표
- [붙임6]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
- [붙임7] [별표 2] 이중용도품목 개정-신구대조표
- [붙임8]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
- [붙임9]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개정-신구대조표
- [붙임10]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
- [붙임11] [별표 3] 군용물자목록 개정-신구대조표
- [붙임12]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
- [붙임13]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개정-신구대조표

| Contact



이하나 관세사
T 02-6011-3035
E hnlee@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